

의안 번호	제 3673호
----------	---------

#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09월 03일, 황성석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09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09월 19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09월 19일

##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와 여비 미지급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 징계처분 종류에 따라 의정비 지급제한 조문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의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의정비 등의 지급 제한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제5조제3항의 경우 의원 개별 의정활동의 범위를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정활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주문사항 :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검토를 거쳐 향후 필요시 추가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11. 첨부서류 : 제출안 1부, **수정안 1부**

#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 및 여비를</u> 소급하여 지급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 설&gt;</u></p>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u>제2조</u>-----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u> ----- ----- . -----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u> ----- -----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p>2. <u>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접거하고 접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u></p>

<신 설>

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673호
----------	--------

제출년월일 2025. 9.  
제출자 의회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3항이 의원의 개별 활동의 범위를 제약할 소지가 있어, 의정활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울러,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필요시 추가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의원 의정 활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 적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삭제(안 제5조제3항)

#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② (생략)                      ③ <u>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u></p>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